

더불어 잘 사는 경제



# 기획재정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2021년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경영공시 추진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, 제96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\*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, 모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.

\* 공사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수(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총 조합원수)가 200명이상이거나, 공사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

3. 이에 따라, 2021년 경영공시를 추진하오니 기한내 경영공시가 완료(www.coop.go.kr에 공시자료 등록)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\*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, 허위·부실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

4. 추가로, 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coop.go.kr → 공지사항 자료실)에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등을 게시하였사오니 공시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등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기획재정부장관



수신자 2021년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등 이사장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회장 귀하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행정사무관 **조용감** 협동조합과장 전결 03/15  
주평식

협조자

시행 협동조합과-292 ( 2021.03.15. ) 접수 협력운영팀-@N ( )

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(어진동) / http://www.moef.go.kr

전화 044-215-5933 / 전송 044-215-8091 / bravejo70@korea.kr / 비공개